

방송 통신 법률 상식

IPTV의 외국인
소유제한

정수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syjung@shinkim.com



법무법인 세종(대표 김두식)은 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법률적 대응이 쉽지 않은 중소규모의 디지털미디어 업체들에게 저작권, 계약, 보안 등 법률적 분쟁이 있을 경우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문의 : ☎ 02-390-4515)

최근까지 세계 경제의 주된 모토가 되어왔던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에 따르면 국제 자유무역 및 자본이동의 자유화는 세계 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전제 중의 하나이다. 최근 월스트리트 반대 시위 등으로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관이 공격받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외국자본 유입을 통한 국내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IMF 이후 계속하여 외국인투자제한을 확대해 왔다.

그렇지만, 통신과 방송분야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이다. 확실히, 우리나라의 군(軍) 통신이나 국가기관 간의 통신을 제공하고 있는 대규모 통신사업자가 외국인 소유가 된다든지, 아니면 뉴스 방송 등을 통하여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가 외국인 손에 넘어가는 경우를 상정한다면 방송과 통신분야에서 외국인 소유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쉽게 반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IPTV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제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제9조는 이러한 외국인 소유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IPTV 사업자에 대하여는 (i) 외국의 정부나 단체, (ii) 외국인, (iii)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특수관계인 포함)이 최대 주주로서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의제외국인)이 합산하여 49%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질 수 없다. 이는 IPTV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만일, IPTV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채널이 종합편성(소위 중편채널)이나 뉴스 보도 등을 행할 수 있다면, 이러한 지분제한은 20%로 더욱 엄격해진다.

참고로,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외국인이 친척이나 계열회사 등을 동원한 분산투자를 통하여 한국 IPTV 사업자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원된 개념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하여지는데, 아주 자세하고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보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파질 것이다. 다만, 이러한 49%의 외국인 지분제한을 계산할 때에는 1% 미만을 소유한 외국인들(위에서 열거한 (i) 내지 (iii)의 자들을 모두 포함함)을 다시 제외한다. 이러한 제한은 대체로 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외국인 소유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와 유사한 내용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의제외국인이라는 개념인데, 의제외국인은 반드시 외국인이 경영권을 지배하지 않더라도 15%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 주주이기만 하면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종종 신문지 상에서 문제되고 있는 10% 미만의 지분을 소유하고도 사실상 대규모 기업집단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가에 의하여 회사 전체가 통제되는 경우 위 의제외국인 규정은 엄청난 효과를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실제로, 과거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대규모 그린메일(경영권을 담보로 보유주식을 비싸게 되파는 행위) 사건에서는 당시 대상이 된 대기업(이 대기업은 당시 안타깝게도 총수일가의 지분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이 대규모의 통신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최대 주주였는데, 외국인 투기자본이 당해 대기업의 지분을 14% 가까이 취득하자 1%만 더 지분을 취득하면 그린메일 공격을 당한 대기업이 전기통신사업법 상으로는 외국인으로 취급되어, 계열회사인 통신회사가 외국인 소유제한 위반을 이유로 사업운영에 매우 큰 애로사항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방송법 상의 소유제한은 IPTV와는 조금 다르다. 물론 국민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출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IPTV 사업자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케이블TV 사업자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Program Provider)의 경우, 방송법 제14조 제3항은 (i) 외국의 정부나 단체, (ii) 외국인, (iii) 외국 정부나 단체, 외국인이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합산하여 케이블TV 사업자나 PP의 지분 49%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의제외국인의 범위가 IPTV 사업자의 경우 외국인이 15% 이상 출자하면서 최대 주주인 기업이고(특수관계인도 합산), 케이블TV 사업자의 경우 외국인이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법인(특수관계인 불포함)이어서, 양자 간에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외국인 투자를 받을 때에 IPTV 사업자는 케이블TV 사업자에 비해 훨씬 더 큰 제약을 받게 된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인식이나 국가 여론 형성 기능에 비추어 볼 때 IPTV와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규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등규제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상 이러한 의문은 일종의 탁상공론에 가까운데, 우선 현재 국내의 IPTV 사업자들은 모두 국가기간통신을 책임지고 있는 KT나 SK브로드밴드와 같은 대기업들이어서 이들에게는 IPTV에 관한 외국인 투자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제가 적용되게 된다. 케이블 업계에서의 MSO 들의 경우에도 거의 모든 MSO들이 초고속 인터넷접속 서비스 등의 기간통신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규제도 같이 받아, 사실상 방송법에 따른 완화된 외국인투자 규제에 의한 혜택은 사실상 없다. 다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PP의 경우 사실상으로는 모두 동일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외국인투자규제를 받음으로써 외국자본에 의한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지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는 시정이 필요할 것이다. ☞